

『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전국(장애인)체육대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전국체전추진단을 해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전국체전추진단 삭제(안 제6조)
- 한시기구 존속기한 변경(안 부칙 제2조)
 - 전국체전추진단 존속기한 : 2022. 5. 31. → 2022. 1. 12.
- 사업소의 위치 현행화
 - 구미시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도로명 주소로 수정(안 별표 2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전국(장애인)체육대회 종료에 따라 전국체전추진단을 해체하고자 제출된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2. 1. 12.로 변경하고 조례안 별표2에 규정된 구미시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